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회사용)

# 회사기재사항

계약번호	S119HGHL00059	영업소	본사	담당자	최상귀	휴대폰번호	010-6206-9162
대여상품 구분	☑ 리스 기본식(정비서비스 미포	함) 🔲	리스 일반	식(정비사	네스 포함)		신차 🗹 보유차 🔲 연장

# 1. 고객사항

	고객	구분	V	법인 🔲 기	바인사업지	가 🔲 개인				
고	상	호	주식	회사 인포솔	÷루션	성명(대표자)	이용규	사	전화번호	031-346-3700
객 기	사업지	l 번호	134	8735399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1314110333246	무 실	팩스번호	031-346-3701
본 사	주소	(본점)	경기	의왕시 성고	고개로 53	3, 808호 809호		대 표	휴대폰번호	010-7146-0115
항	우편물=	<u></u> 수령주소	경기	의왕시 성고	고개로 53	3, 808호 809호 이용규	808호 809호 이용규			
	사용본기	<sup></sup> 너지주소						전면허번호 , 개인사업자)		
	구분	근무부	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E-MAIL
차량	량이용자			신현철	차장		010-2791-68	31		
차형	량관리자									
회계관리자 전호:		전호수	부장	031-346-3700	010-3302-48	40	jlake@	infosolution.co.kr		

# 2. 대여이용 기본사항

대 여	차종		선택사양	외장색상	내장색상	차량가격 -제조시	· 기격표상 소비져	[   	대수
차 량	1 41414 = 000 3.3 FIESHUE		파노라마 썬루프	티타늄 블 랙 [T5K]	블랙 모노	59,800,000원 (41,670,000원)			1대
이용 기간		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기타()개 20 년 월 일부터~20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월 비고			
	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	<del>!</del>		보험가입	금액(보상한도)			
	☑ 계약자의 임직원		대인배상		무한(대인비	배상 I,II)	※ 자기차량손		
보험	(법인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기 입)	- E2041018	대물배상	☑ 1억원	□ 2억원	! 🗖 기타()	사고건당	☑ 30만 □ 기타(	
사	계약자	민24세이상 민21세이상	자기신체사고	☑ 1억원	1억원		(별도의 당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제도에
항	계약자의 임직원/가족 계약자 임직원의 가족	E EZIMIOIS	무보험차상해	☑ 가입(፲	괴보험자1인당	최고2억원) 🔲 미가입	의거 보상 – 좌측의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 약관에 준함)		
	※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시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미포함)				긴급출동 : 1588-6688, 1670-5494				
		공통서비스	교통사고 발생	생시 사고처리	업무 대행	☑ 사고대차서비스(단	단, 피해사고/	시는 보험대	차)
		☑ 기본식(정비서비스 미포함 상			품) 발식(정비서비스 포함 상품)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된 □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ul><li>대여 개시 2개월 (24시간 이상 정)</li><li>대여 개시 2개월 (단기 대여요금의</li></ul>	유선 상담서비스 상시 제공 ! 이내 무상 정비대차 제공		- 제조사 <i>i</i> ※ 지정 정 * 정비대차서 - 4시간 이	구성부품/소모품 점검, 교환 타량 취급설명서 기준 비업체에 고객이 입고하여 비니스 상 정비공장 입고시	정비	스합니다.	
		※ 사고발생시 임차업	인의 임의적인 사고수리는 인정되 량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지 않습니다.					

# 3. 대여요금

구분	보증금	선납금	개시대여료	월대여료	월대여료	월대여료
공급가	10,427,500원	0원	0원	854,000원	납입할 횟수	납입할 날짜
부가세		0원	0원	85,400원	36회	매월 말일
합계	10,427,500원	0원	0원	939,400원		W 2 2 2 1
초기 납입금 합계 :		남계 : 10,42	27,500원			출금(CMS) 기준 금액입니다. 결제일은 계약 만료일입니다.
	※ 선납금 납부시 세금	계산서 발형	행 방식 : ■ 매월	균등 발행 📗 일시발행	Hot Line: 0	10-7204-1007

<sup>1.</sup>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후 고객님께 환불해 드립니다.

대표이사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2. 선납금은 이용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공제되며, 계약 만료후 환불되는 돈이 아닙니다. 3. 개시대여료는 마지막(0)개월치 대여료를 선납하는 것입니다. 4. 초기 납임금(보증금, 선납금, 개시대여료)은 신차출고 2일전까지는 (주)아마존카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별지 CMS 출금이체 신청서 2	악성
납입		자동이체 대상	월대여료, 연체이자, 해지정산금, 면책금, 과태료
방법	통장 입금 (은행 선택)	산)	□ KEB하나 188-910025-57904 □ 기업 221-181337-01-012 □ 신한 140-003-993274(부 □ 우리 103-293206-13-001 □ 농협 367-17-014214 □ 신한 140-004-023856(대전)
		니 국민 365-01-0020-122	- 10 구디 103-293200-13-001 다 등합 30/-1/-014214 다 전한 140-004-023630(대전)

# 4. 보증보험

□ 가입 ☑ 가입면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0 만원, 7이 때, 차량대여요금의 연체,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면책금 등과 같이 본 7인차인이 예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인은
		보증보험료	0원

# 5. 특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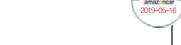
구분	내용					
약정 운행거리	(5) 약정문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상태에서 연장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초과운행대여료를 정산하여야 연장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단, 아마존카가 초과운행대여료의 사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약정운행거리에 연장기간의 약정운행거리를 합산하여 연장 대여 종료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6) 초과운행대여료 = 초과운행거리(km) X 초과 1km당 초과운행대여료(원)(부가세별도)  ※ 보유차 계약시점 주행거리: (17,584)km, 좌측의 주행거리는 보유차 계약시에만 기재하고, 초과운행거리 산정시의 기준으로 삼는다. 보유차 계약시에도 초과운행거리 산정시 기본공제거리 1000km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1) 대여료 연체시 년리 24%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2) 대여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여료 연체시						
중도해지시	(1) 계약의 중도해지시에는 <b>잔여기간 대여료의 (30)%의 위약금</b> 을 배상하여야 한다.  ※ 기본위약금을은 <b>30%</b> 이며, 차중에 따라 위약금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잔여기간 대여료 = (대여료 총액 + 계약이용기간)×잔여이용기간  ★ 대여료 총액 = 선납금 + 개시대여료 + (월대여료 ×총계약기간동안 월대여료 납입할 횟수) (2) 위약금의 정산: 보증금 및 개시대여료, 잔여선납금으로 정산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후 7일이내에 임차인이 위약금을 완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위의 4.보증보험으로 정산할 수 있다. (3) 보증금, 개시대여료, 잔여선납금으로 변제하는 순서 : ①범칙금, 과태료 ②가압류비용, 소송비용 등 법적구제 비용 ③차량회수(자구행위)를 위하여 임대인이 부담한 실비용 ④면책금 ⑤면체이자 ⑥중도해지위약금 ①미납대여료					
계약승계시	계약을 승계받을 고객은 임차인이 찾아야 하며, 계약승계를 승인할 지 여부는 ㈜아마존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계약승계 수수료는 [제조사 가격표상 신차 소비자가격의 0.8%](부가세포함)로 한다. (중고차매매상에게 또는 계약만료 3개월이내 계약승계 불 가)					
한달미만 대여요금	대여요금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 이용기간에 대한 대여요금은 "이용일수×(월대여료÷30)"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시의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위 대여이용 차량을 아래의 매입옵션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중고차 매입선택권(중고차 매입옵션)]을 가진다.					
중고차 매입옵션	매입옵션가격 21,272,100원(부가세 포함) 매입옵션 ★법인고객: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종업원 행사권자 범위 ★개인고객: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자녀/배우자					
차량의 반납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최초 인도 받은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타						

■ 본 계약서 1. 고객사항에서 5. 특약사항 까지의 내용은 첨부된 아마존카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계약일: 2019년 05월 16일	
<b>대여제공자(임대인)</b>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802호(여의도동, 태흥빌딩)	대여이용자(임차인) 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1통을 정히 수령함. 위 대여이용자	A A

인

(주)아마존카 대표이사 조 성 희



주식회사 인포솔루션 대표이사 이용규

¬ -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16, 203동 1	A .
공 동 임차인	생년월일	19681101	amaz 2019-
	성명	이용규	.019

계약서 양식 개정일자 : 2018년 10월







-05-16

# 아마존카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시설대여 자동차의 임대인 (주)아마존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이하 "리스" 또는 "대여"라고 합니다)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리스계약의 체결)

리스계약의 체결은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합니다)에 의하며, 계약서에는 고객의 기본정보, 대여차량 정보, 이용기간, 자동차 보험사항,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월대여료, 초기납입금 및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약정운행거리, 초과운행대여료, 중도해지시 위약금율, 계약기간 만료시 중고차 매입 선택권(이하 "매입옵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 매입옵션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3조(리스기간)

리스기간은 계약서에 표기된 이용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되, 리스기간 시작일은 고객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동차인도·인수증에 서명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교부(전자 서명·교부포함)한 경우 이로써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4조(운전자)

① 리스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보험사항"의 "운전자연령"을 충족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리스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보험사항"의 "운전자범위"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단, 계약서에 추가운전자로 명시된 자가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③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법인 고객의 경우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임차인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본 계약 리스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제5조(리스차량 및 월대여료 등)

- ① 리스차량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차량"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고객에게 리스하며,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리스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합니다.
- ③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 ④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대여료"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계약서에 기재된 "월대여료"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⑥ 차량 출고일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가격 변동 등으로 리스차량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① 리스기간의 개시 후 관계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및 사용,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지급 금액을 남아있는 월대여료에 안분하여 반영하기로 합니다.
- ® 고객이 리스차량을 인수받은 후 리스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계기관에 납부자 변경신청을 하여 고객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 제6조(초기납입금)

- ① 고객은 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초기납입금(보증금, 선납금, 개시대여료)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② 초기납입금(보증금, 잔여선납금, 개시대여료)은 고객이 연체한 월대여료를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합니다.
- ③ 고객은 초기납입금(보증금, 선납금, 개시대여료)을 납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만료 되고 고객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시 납입했던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⑤ 선납금은 리스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공제되며, 계약만료 후 환불되는 돈이 아닙니다.
- ⑥ 개시대여료는 마지막 몇 개월치 대여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마지막 몇 개월치의 대여료를 선납할지는 회사와 고객과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니다
- ① 계약의 중도해지나 계약만료시 초기납입금(보증금, 잔여선납금, 개시대여료)으로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정산하고도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제7조(보증보험)

- ①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리스계약 기간 동안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된 보 증보험료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납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등과 같이 계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고객이 예치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차량인도 전 계약 해지)

- ①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약정기일에 고객이 초기납입금을 미입금 하는 등의 사유로 고객과 회사는 리스계약의 차량이 출고(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발급)되기 전에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리스계약의 차량이 출고(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발급) 된 후 차량등록 전에 고객 사정에 의하여 고객이 리스계약 해지를 요청 할 경우에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반납이 가능한 경우: 탁송료 등 실비용. 단, 제조사에서 반품을 거절하여 출고장이 아닌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을 대신 인수하여 줄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할인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 2.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 가. 타인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된 금액 등
  - 나. 매각 할 경우: 매각 전까지 들어간 보험료, 탁송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량구입비와 매각대금의 차액 등
- ③ 차량등록 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고객 사정에 의하여 고객이 리스계약 해지를 요청 할 경우에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된 금액 등
- 2. 매각 할 경우: 매각 전까지 들어간 보험료, 탁송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량구입비와 매각대금의 차액 등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보다 클 경우에는 고객은 중도해지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회사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9조(차량의 인도)

① 고객은 차량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차량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동차인도·인수증에 서명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교부(전자 서명·교부포함)하기로 하고, 교부한 때부터 리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리스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인도·인수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부적합 또는 하자를 자동차인도·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0조(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 ① 본 계약 리스차량 제조사의 사정(파업, 휴무, 품질불량 등)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리스차량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고객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은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제11조(차량의 관리)

- ①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차량을 정비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본 계약서상 "일반식" 상품(정비서비스 포함 상품)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여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제12조 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차량 정비 건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②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고객이 책임지며, 고객은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냉각수, 엔진오일의 점검 등)을 주지시켜 이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말합니다. 디젤연료 요소수 분사 차량을 리스한 고객은 요소수를 상시 보충하여 요소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요소수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리스차량의 법정 정기검사 등을 위해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리스차량을 인도하고 법정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합니다.
- ④ 고객은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⑤ 리스차량의 내 외관 및 성능 이상 발생시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리스차량 제조사의 보증수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21조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회사 소유 차량을 고객에게 리스하는 보유차 리스(재리스)의 경우, 회사는 엔진·변속기(일 반부품 및 소모성부품 제외)에 대해 리스 개시 후 2개월/5,000km(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 내에서 품 질 보증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위 기존 보유차 리스(재리스) 차량의 품질보증 내용 외에는 제5항과 같이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2조(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 ① 회사는 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 고객에게 리스차량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 ③ 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자기차량손해 면책금(자기부담금) 등 보험사항은 계약서 "보험사항"의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 또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가입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해당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합니다.
  - 1. 고의로 인한 손해
  - 2. 본 약관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 3,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와 별도의 협의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한 손해 ⑤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발생시 차량의 손해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거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고객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고건당 자기차량손해 면책금(자기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수리비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고건당 자기차량손해 면책금(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은 실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차량 손해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고객이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리스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⑧ 피해사고로 인해 발생된 격락손해금은 회사가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계약만료시 고객이 차량을 인수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12조의2 (고객피보험자 보험)

① 회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 할 경우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고, 고객은 질권 청구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하며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은 회사가 수령하기로 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된 격락손해금은 회사가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고객이 차량을 인수 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당해 자동차 보험증권은 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보험 가입시 적용할 운전자 범위, 운전자 연령, 보험보상 한도, 자기차량손해시 자기부담금 등은 별도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월 보험료가 포함된 대여료를 기재하고 고객은 월 보험료가 포함된 대여료를 매월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⑥ 보험 갱신시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증감될 경우 월 보험료가 포함된 대여료의 증감이 있습니다.
- ① 고객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기로 합니다. 다만, 제1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해당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합니다.
- ⑧ 제1항의 보험으로 체결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출시 대여료 기준은 보험료포함 월대여료입니다.

### 제13조(사고처리)

- ① 고객은 리스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처리하여야 합니다.
  -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
  -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 4. 회사가 승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등에 수리 의뢰
- ② 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14조(대차차량의 제공 등)

- ① 회사와 고객은 고객 과실로 인한 리스차량 손해 발생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차 차량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고 등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사고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대차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② 피해사고로 인한 리스차량 손해 발생시에는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요청시 회사는 리스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차 량을 고객에게 보험대차 하기로 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차료를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때 고객은 대차료 청구와 관련된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회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이 본 계약서상 "일반식" 상품(정비서비스 포함 상품)을 선택한 경우 차량 정비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시 대차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단, 4시간 이상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차차량을 제공합니다.
- ④ 대차차량 제공시 대차차량은 리스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하며, 차량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급의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대차차량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제12조 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고 및 정비 건에 대해서는 대차차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5조(차량의 도난, 멸실 및 훼손)

- ① 고객은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차량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 제12조의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제12조의2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차량이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도난의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량이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2조의 당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거 처리하되,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약관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제16조(금지행위)

고객은 리스기간 중에 리스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유상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3.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4.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 5.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차량출입제한구역등)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거리 조작,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교체등)
- 7. 무면허 및 음주운전
- 8. 계약서상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 9.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11.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
-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7조(배상책임)

고객은 리스기간 중 제16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18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1. 대여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 2. 제16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3.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적시하여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금지행위의 위반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

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3호의 경우 차량의 멸실 사실 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함을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각 호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고객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고 미납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등 약정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사유발생시 고객이 잔여 리스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동종 차량으로 대체하여 이용하거나, 잔여 리스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동급의 다른 차량을 계약하여 이용할 경우 제21조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면제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과거 사고이력, 해당 사고경위, 운전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종 차량 제공이나, 다른 차량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의 제12조 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제1항 제3호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제5항의 금액과 별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차량가액(해지일 기준 중고차시세) 회사의 당해 차량 처분금액

#### 제19조(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 ① 고객은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고객은 회사와 협의한 일자에 리스차량을 반납하고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초과운행대여료 등의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 제20조(리스계약의 종료)

- 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 되는 경우 리스차량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만료 되어 고객으로부터 리스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차량의 회수 또는 차량 반환일을 정산 기준일로 하여 미납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등의 금액을 산정하고 제23조(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시 정산)에 따라 정산합니다. ③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기간 종료시 고객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중도해지 위약금)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체없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위약금 = 잔여기간 대여료  $\times$  계약서상 기재된 위약금율

- ★ 잔여기간 대여료 = (대여료 총액÷계약이용기간)×잔여이용기간
- ★ 대여료 총액 = 선납금+개시대여료+(월대여료×총계약기간동안 월대여료 납입할 횟수)

#### 제22조(초과운행대여료)

- ① 리스계약에 의해 약정한 차량의 운행거리를 고객이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대여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초과운행대여료 = 초과운행거리(km) × 계약서에 기재된 초과 1km당 초과운행대여료(원) (부가세별도)
  - 2. 초과운행거리 계산 : 대여 종료시(중도해지 포함) 차량의 운행거리가 [연간 약정운행거리×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대여 종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고, 계약의 중도해지시에는 약정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합니다. 초과운행거리 산정시 기본공제거리 1000km를 제외하고 산정하기로 합니다.
- ② 임의의 계기판 교체 및 주행거리 조작시 약정운행거리의 2배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합니다.
- ③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상태에서 연장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초과운행대여료를 정산하여야 연장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초과운행대여료의 사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약정운행거리에 연장기간의 약정운행거리를 합산하여 연장 대여 종료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합니다.

## 제23조(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시 정산)

- 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계약만료 되었을 경우 미납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자기부담금) 등 리스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니다.
  - 1. 보증금 및 잔여선납금, 개시대여료로 정산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고객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계약건의 경우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시 7일이내에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완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권리 행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은 잔존 정산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보증금, 잔여선납금, 개시대여료로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 : a.범칙금, 과태료 b.가압류비용, 소송비용 등 법적구제 비용
- c.차량회수(자구행위)를 위하여 임대인이 부담한 실비용 d.면책금 e.연체이자 f.중도해지위약금 g.미납대여료 h.기타 채무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 후 초기납입금(보증금, 잔여선납금, 개시대여료)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제24조(지연배상금)

고객이 월대여료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여료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대여료 등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 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 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 제25조(통지의무)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기타 본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6조(계약 승계)

회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승계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차량반납시 원상복구의무)

고객은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최초 인도 받은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차량 미반환에 대한 조치)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출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본 계약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문서로써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운전지의 운전지격 확인 포함)

### ㈜아마존카 귀하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회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요금정산 (대여료 결제, 세금계산서 발송, 대여료 추심 등), 차량이용 중 발생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의 납부자변경, 운전자격 확인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자동이체 계좌번호, 직업, 소득 및 재산정도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다만,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증 사본 포함),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제공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제공목적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자동차 대여이용 정보, 대여료 불입정보 등)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조회 업무 목적 달성시 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① 차량 사고의 처리 및 보험 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 체결, 대차료 청구 등을 위하여 가해차량 보험 보험회사 및 본 대여 차량 가입 보험회사(렌터카공제조합,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에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제공 ② 차량 구매자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해당 금용사에 본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제공 ③ 차량 이용 중 발생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의 납부자 변경을 위하여 해당 관공서 및 도로관리 기관 등에 본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제공 ④ 차량 탁송을 위하여 탁송사에 성명,주소,연락처를 제공 2)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할 신용정보: 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카드개설/신용개설정보 등), 신용등급 등      - 조회목적: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 체결여부 결정 및 유지여부 판단, 연체관리 등을 위하여 조회      - 조회동의 효력기간: 동의서 제출시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 동의는 본 계약의 갱신이나 추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의무 때문에 부득이 알려드리오나, 실제 2011.10.4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타 금융기관 등에 조회정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2011.4.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참조      ② 2011.10.4부터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 모든 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반영을 금지하고, 조회정보 제공을 금지함
운전자의 운전자격 ☑ 있음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상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상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약상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위·변조 하

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관련 각 항목은 필수 동의사항으로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어 부득이 계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 □ 동의함 에 체크를 해주셔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성명 <u>이용규</u> 성명 <u>이용규</u> 설명 <u>2019 년 5월 16일</u>

※ 본 계약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문서로써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

수납기관명	주)아마존카				
대 표 자	조 성 희	사업자등록번호	128-81-47957		
사업장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02호 (여의도동,태흥빌딩)	수납 요금종류	월대여료, 연체이자, 해지정산금, 면책금, 과태료		

### ※ 신청서 및 통장사본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기업은행 평생계좌 신청 및 사용 불가합니다.

상호	주식회사 인포솔루션	차량번호	547\4625
출금계좌 예금주명	주식회사 인포솔루션	예금주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34-87-35399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출금계좌번호	100030511311
예금주 연락처	031-346-3700	예금주 휴대전화	010-7146-0115
신청인명	주식회사 인포솔루션	예금주와의 관계	
신청인 연락처	031-346-3700	신청인 휴대번호	010-7146-011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고려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 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9년 05월 16일

**신청인**: 주식회사 인포솔루션



- 주) 1.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3.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계약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문서로써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